

● 제303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99]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03]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15]
검 토 보 고 서

2021. 11. 2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799 2803 2815

I. 조례안 개요

1.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99)

가. 제출자 :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 (외 10명)

나. 제출일자 : 2021년 10월 15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2.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2803)

가. 제출자 :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 (외 11명)

나. 제출일자 : 2021년 10월 15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3.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15)

가. 제출자 :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 (외 11명)

나. 제출일자 : 2021년 10월 15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1.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99)

- 서울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타 시도에 비해 협소한 실정임.
- 이에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지원 대상에서 상이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 제외 기준을 삭제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2803)

-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공적에 비해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해당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보훈수당은 중복지급이 불가하므로 '20년 신설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자 함.
- 먼저 상이자에 대한 대상자 제외 기준을 폐지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또한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자치구 제외 규정을 폐지하여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원의 폭을 넓히고자 함.

3.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15)

- 서울시 생존 애국지사는 총 3명이며, 평균연령 95세 고령으로 이들에 공적에 대해 예우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함. 하지만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은 20만원으로 저소득층 수당과 동일한 수준으로 차별화가 없으며,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이에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고령의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99)

-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을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보훈급여금(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대상자까지 확대함. (안 제3조)

2.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2803)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안 제7조제3항제4호)
-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기준에서 상이자 대상자 제외 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7조제4항)

3.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15)

- 생존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인상함. (안 제3조제1항제1호)

Ⅲ. 참고사항

1.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99)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2.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2803)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3.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15)

가.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 등 예우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IV.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요

-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은 참전유공자(의안번호 2799), 보훈대상자(의안번호 2803), 독립유공자(의안번호 2815)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고, 그동안 제외대상이었던 사람들을 수당 지급 대상으로 편입시키고자 제안된 안임.

2 주요내용 검토

가. 보훈수당 지급 관련

- 서울시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예우대상자 등에 대하여 월 10~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구 분	계	보훈명예 (애국지사)	독립유공생활지원 (저소득독립유족)	참전명예 (참전유공자)	보훈예우 (민주화 특수임무)	생활보조 (저소득층)
월지금액	-	20만원	2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월 인 원	39,344명	4명	2,900명	31,440명	400명	4,600명
예 산 액	50,713백만원	25백만원	6,960백만원	37,728백만원	480백만원	5,520백만원
예산비율	100%	0%	14%	74%	1%	11%

- 그러나 애국지사의 경우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임. (의안번호 2815 관련)

구 분	서울	경기	대구	대전	전북
지급대상 (명)	3	5	2	1	1
월지금액(만원)	20	100	100	100	30

- 또한 4.19 혁명공로자, 5.18민주화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하여서는 상이(부상)자에게는 보훈급여가 월 49만 6천원~553만 9천원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이자 외의 대상에 대하여서는 월 49만6천원 미만이 지급되고 있는데(보훈처 지원) 상이자 외의 대상에게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상이자와 상이자 외의 대상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남. (의안번호 2803 관련)

대상별	국가보훈처 지원		서울시 지원	
	수당명	금액(단위:천원)	수당명	금액(월)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보훈급여금 (상이1~7급)	496~5,539	-	-
	상이자 외	496 미만	보훈예우수당	10만원

- 참전유공자 수당의 경우 고엽제후유증수당을 받는 사람과, 상이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 보훈처 지원금액으로 최소액이 각각 48만 9천원, 49만 6천원으로 나타나나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보훈처 지원금액 34만원과 서울시의 보충적인 지원을 통해 44만원이 되어 상이 또는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이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역차별로 보일 수 있음. (의안번호 2799 관련)

대상별	국가보훈처 지원		서울시 지원	
	수당명	금액(단위:천원)	수당명	금액(월)
참전유공자	상이 보훈급여금 (상이1~7급)	496~5,539	-	-
	고엽제후유증수당	489~1,010		
	참전명예수당	340	참전명예수당	10만원

나. 참전유공자 수당 관련(의안번호 2799)

-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각목1)에 의해 6.25 전쟁이나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군인과 경찰을 포함함.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²⁾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조례 제3조³⁾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의 지급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참전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거주조건은 유지하는 안임.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 <생략>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2)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③ 수당 지급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타 시·도 전입자와 주민등록 재등록, 신규등록자는 전입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지급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서울지방보훈청장(남부·북부 보훈지청장 포함) 및 자치구청장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결정한다.

⑤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현행	개정안
<p>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 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u></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p> <p>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p>	<p>제 3 조 (지 원 대 상)</p> <p>-----</p> <p>-----</p> <p>-----</p> <p>-----</p> <p>----- (삭제)</p> <p>1. (삭제)</p> <p>2. (삭제)</p>

다. 보훈대상자 수당 관련(의안번호 2803)

- 4.19의거와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의 경우도 상이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서울시의 추가수당이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자치구의 지원을 받는 경우 자치구의 보훈수당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4)

4)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지하철, 장묘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를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

-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보조수당과 중복지급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며(개정안 제7조제3항제4호), 상이자의 경우에도 서울시가 추가로 지급하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자에 대한 제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임. (개정안 제7조제4항)
- 또한 개정안 제7조제4항제3호는 자치구 조례로 지원하는 추가수당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조례로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안임.
 - 자치구 조례에 의한 지원은 중복수급이 가능함.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② (생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가 65세 이상으로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별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제9호 내지 제13호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만,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생활보조수당에서 각 수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유족 및 가족제외)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해 지원 받고 있는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상이등급별 7급에 해당되는 월 보상금 지급액 미만의 금액을 지원받는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2호, 제13호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 다만,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⑤ 제3항의 생활보조수당 및 제4항의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예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만,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생활보조수당에서 각 수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유족 및 가족제외)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해 지원 받고 있는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

1. ~ 3. (현행과 같음)

4. -----

----- 보훈명예수당 및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생활보조수당과 중복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

표4]에서 정한 상이등급별 7급에 해당되는 월 보상금 지급액 미만의 금액을 지원받는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1. 2. (생략)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

다만,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⑤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

-----는 제외한다-----

⑤ (현행과 같음)

라. 독립유공자 수당 관련(의안번호 2815)

- 서울시에 현재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는 총 3명으로 이분들께 월간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예우의 수준이 낮은바 이분들의 예우를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p>제3조(지원사업) ①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p> <p>1. 생존애국지사에게 월 <u>20만원</u>의 보훈명예수당 지급</p> <p>2. ~ 6.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지원사업) ① ----- ----- ----- ----- --.</p> <p>1. ----- <u>100만원</u> ----- -----</p> <p>2.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3 종합의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음.
-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은 관계 법률의 제정목적에서 밝히는 내용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고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입법 취지 및 제정목적과 다르지 않다고 사료됨.

문의처

허아름 입법조사관 (02-2180-8145)